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 의 자 : 고민정 · 이병진 · 김문수
조인철 · 민형배 · 문진석
박성준 · 김 윤 · 한정애
윤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,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함.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생명·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,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·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.

2025년 1월,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법치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음.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, 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였음에도 거부하기 어려워해, 경호처가 ‘사병화’ 됐다는 비판을 받음.

이에 경호대상이 내란·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·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,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, 정치적 중

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.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4조1항 단서 등).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였거나 이를 교사·방조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이 체포·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9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부당간섭 배제 등) ① 소속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공무원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.

제18조의2(정치운동의 금지) ① 소속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제9조제1항,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”을 “제9조제1

항, 제18조,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경호대상) ① 경호처의 경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. <단서 신설>	제4조(경호대상) ① ----- ----- . <u>다만,</u> <u>「형법」 제2편 제1장 내란의</u> <u>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</u> <u>하였거나 이를 교사·방조하였</u> <u>다는 이유로 법관이 체포·구</u> <u>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그 영</u> <u>장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경</u> <u>호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9조의2(부당간섭 배제 등) ① <u>소속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</u> <u>을 현저하게 해치는 명령을 받</u> <u>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</u> <u>이를 거부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② <u>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</u> <u>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공무원은</u> <u>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</u> <u>다.</u>
	제18조의2(정치운동의 금지) ① <u>소속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</u> <u>제65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</u>

제21조(벌칙) ① <u>제9조제1항,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② (생략)	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② <u>누구든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제21조(벌칙) ① <u>제9조제1항, 제18조,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제2항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